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제61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같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1.일 시 : 2019년 2월 19일 (화) 오전 09시
- 2.장 소 : 경남 양산시 총령로 355 넥센타이어주식회사 본사 강당

### 3.회의목적사항

<보고안건>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61기(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31일)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이익잉여금처분(안)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4-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관계	회사와의거래내역	비 고
강 호 찬 (사내이사)	1971년 10월 30일	현, 넥센타이어(주) 대표이사 현, (주)넥센 대표이사	이사회	최대주주	최대주주	재선임

- 제4-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관계	회사와의거래내역	비 고
김 현 전 (사외이사)	1971년 9월 18일	현, 화양산업(주) 대표이사 전, 삼성테크윈 재직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재선임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관계	회사와의거래내역	비 고
김 현 전 (사외이사)	1971년 9월 18일	현, 화양산업(주) 대표이사 전, 삼성테크윈 재직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재선임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규정 일부 변경의 건(※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4.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1일



대 표 이 사 강 호 찬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

**붙임 :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현 행 (변경 전)	개 정 (변경 후)
제 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억주로 한다.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u>십억</u> 주로한다.
제8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④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추후 유무상증자가 있거나 주식배당이 있을 경우에 우선주식을 배정 또는 배당한다.	제8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④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종류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시 보통주식 또는 동일한 조건의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9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9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 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2조 (명의개서대리인)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제12조 (명의개서대리인)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u>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u>
제13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2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3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
제17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2조, 제13조, 제14조 규정은 사채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2조, 제14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4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제44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⑥ 감사위원회는 <u>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u>
(신설)	제44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7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 제7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규정 일부 변경의 건**

현 행 (변경 전)	개 정 (변경 후)
4-3 임원이 중임되었을 경우 재임 기간은 이를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직위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각 직위 재임 기간별로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4-3 임원이 중임되었을 경우 재임 기간은 이를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u>직책이</u>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각 <u>직책</u> 재임 기간별로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